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2-01-25

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20가단12674 배당이의

원 고 [redacted]시

소송대리인 A, B, C

피 고 [redacted]공단

변 론 종 결 2021. 10. 13.

판 결 선 고 2021. 12. 8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[redacted]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. 8. 27.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,532,060원으로,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,356,080원을 0원으로, 12,679,390원을 11,503,410원으로 각 경정한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2-01-25

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(가지번호를 포함한다), 갑 제2 내지 8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가. 2015. 4. 25. E은 [redacted]구 F에 있는 G동호 건물(이하 '이 사건 1 건물'이라고 한다)의 소유권을, H는 I에 있는 J동호 건물(이하 '이 사건 2 건물'이라고 한다)의 소유권을 각각 취득하였다.

나. 이 사건 1 건물에 관하여, ① 2014. 10. 6. 청구금액 300,000,000원의 주식회사 K 명의의 가압류등기가, ② 2014. 12. 29. [redacted]지방법원 2014. 12. 16.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인 L 주식회사 명의의 임차권등기(임대차보증금 20,000,000원)가, ③ 2015. 10. 5. 처분청을 [redacted]세무서로 하는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가, 2016. 1. 5. [redacted]특별시[redacted]수도사업소 명의의 압류등기가, ④ 2017. 6. 7. 채무자 M, 채권최고액 100,000,000원, 근저당권자 N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'라고 한다)가, ⑤ 2016. 12. 21. 처분청을 [redacted]세무서로 하는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가, ⑥ 2017. 6. 16. 피고 명의의 압류등기(위 압류등기에 청구금액이 따로 기재되지는 않았다. 이하 '이 사건 1 압류'라고 한다)가, ⑦ 2018. 5. 3. 원고 명의의 압류등기(이하 '이 사건 2 압류'라고 한다)가, ⑧ 2018. 12. 18. 포천시 명의의 압류등기가 각각 마쳐졌다.

한편 원고가 이 사건 2 압류를 위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한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촉탁서에도 청구금액, 즉 E이 체납한 지방세의 종류와 법정기일 및 체납세액 등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.

다. 한편 E은 2019. 1. 21.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9. 1. 2.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2-01-25

주식회사 O(이하 '소외 회사'라고 한다)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라. 이 사건 1 건물의 임차인 L 주식회사의 승계인인 N은 [redacted]지방법원(이하 '집행법원'이라고 한다) D로 이 사건 1, 2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, 집행법원이 2019. 6. 19.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이 사건 1, 2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절차(이하 '이 사건 강제경매'라고 한다)가 개시되었다.

마. 집행법원은 배당요구기한을 2019. 8. 30.으로 정하였고, 피고는 배당요구 기한 내에 이 사건 1 압류의 원인이 된 E의 체납 연금보험료, 건강·요양보험료 합계 23,035,470원(= 연금보험료 3,456,600원 + 건강· 요양보험료 19,518,520원 + 부당이득금 60,350원)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였다(원고와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상 권리자들의 채권신고 또는 교부청구 내역의 기재는 생략하기로 한다).

바. 집행법원은 2020. 5. 18. 이 사건 1, 2 건물의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후 2020. 8. 27. 이 사건 1, 2 건물에 관한 배당기일을 개최하였다.

사.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517,586,757원(그중 이 사건 1 건물과 관련한 실제 배당할 금액은 461,008,446원이었다)으로 하여 작성된 배당표(갑 제1호증, 이하 '이 사건 배당표'라고 한다) 중 이 사건 1 건물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면 별지 (1) 표 중 '원인일자'란, '구분'란, '채권자'란, '배당요구액'란, '기존배당액'란 기재와 같다[다만, 위 표 마지막 행 '[redacted]시(세무과)' 부분은 제외한다].

아. 원고는 배당기일인 2020. 8. 27. 당일 집행법원에 이 사건 1 압류에 관하여 별지 (2) 표 기재와 같이 E이 체납한 지방세의 종류(재산세 및 가산금)와 법정기일 및 체납세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교부청구서를 제출하고서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였다.

자사. 한편 위 배당기일에서, ① 이 사건 강제경매의 채무자인 E은 L 주식회사의 승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2-01-25

계인 N의 배당액 전액(929,042,053원)에 대하여, 근저당권자 N의 배당액 전액(99,629,888원)에 대하여, ② 임차인라는 P는 근저당권자 N의 배당액(99,629,888원) 중 20,000,000원에 대하여, ③ 압류권자인 원고는 피고(강북지사) 배당액 중 10,356,080원 전액 및 12,679,390원 중 1,175,980원에 대하여, ④ 가압류권자인 Q 유한회사(앞서 살펴본 가압류권자인 주식회사 K의 승계인으로 보인다)는 근저당권자 N의 배당액(99,629,888원) 중 24,144,276원에 대하여 각각 이의하였다.

2. 당사자의 주장

가. 원 고

1) 원고가 배당요구종기일인 2019. 8. 30.까지 집행법원에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강제경매의 개시결정 전인 2018. 5. 3.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마쳐 별도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, 원고가 배당기일인 2020. 8. 27. 교부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 배당요구도 적법하다.

2)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71조는,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되, 위 법에서 예외로 정한 공과금과 그 밖에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피고가 E에 대하여 부과한 공과금은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원고의 지방세채권이 피고의 공과금채권에 우선한다.

3) 따라서 집행법원은 원고의 순위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강제경매의 개시결정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E에 대한 지방세 채권(재산세 및 가산금)에 관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집행법원은 원고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잘못 작성하였다.

4) 한편 원고는 후순위권리자 중 누구라도 지정하여 이 사건 배당표의 정정을 구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2-01-25

할 수 있으므로,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11,532,060원을 배당하고, 피고에게는 배당액 10,356,080원은 전부 배당하지 않고, 배당액 12,679,390원 중에서는 11,503,410원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.

나. 피 고

원고는 집행법원이 처음부터 원고의 배당이의를 받아들여 배당표를 작성하였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채권자, 즉 배당표상 가장 후순위 채권자로부터 순차로 거슬러 올라가 원고의 배당요구액에 달할 때까지의 배당액에 관계된 채권자에 대하여만 이의할 수 있는데, 설령 원고의 채권이 피고의 채권[별지 (1) 표 순번 D, J]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더라도, 피고는 피고의 후순위 채권에 해당하는 가압류채권[위 별지 표 순번 A) 및 변상금(위 별지 표 순번 E), 일반채권(위 별지 표 순번 O)에서 전액 흡수할 수 있어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은 동일하게 되므로,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할 수 없다.

3. 판 단

가. 집행법원이 원고에 대한 배당을 할 수 있는지 여부

1) 구 국세징수법(2020. 12. 29.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'구 국세징수법'이라고 한다) 제47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한 부동산 등의 압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, 위 규정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한 동일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이고, 압류에 의해 이후 발생하는 국세채권에 대하여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2-01-25

닐 뿐 아니라, 압류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교부청구 효력까지를 인정하는 취지 또한 아니다. 따라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이후 매각기일까지 별도의 교부청구나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일단 집행기록에 있는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조세체납액에 대해서 배당을 할 것이지만, 배당액이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 부분은 후순위 배당권자의 배당이의 대상이 된다. 이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따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체납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(대법원 2012. 5. 10. 선고 2011다44160 판결 등 참조). 이와 같은 법리는 지방세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.

한편 이와 같은 경우에 비록 매각기일 이전에 체납세액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이를 보정하는 증빙서류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, 집행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각기일 전의 신고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위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국가가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(대법원 1999. 1. 26. 선고 98다21946 판결, 2000. 9. 8. 선고 99다24911 판결 등 참조), 압류채권자는 매각기일 후에 한 교부청구에 의하여도 우선배당을 주장할 수 있으나, 그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압류등기상 청구금액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(대법원 2002. 1. 25. 선고 2001다11055 판결 참조).

2)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2-01-25

이 사건 강제경매의 개시결정일인 2019. 6. 19. 전인 2018. 5. 3. 이 사건 1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2 압류가 이루어졌으나, 이 사건 1 건물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2 압류를 위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한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에도 원고의 청구금액(채무자 E이 체납한 지방세의 종류와 법정기일 및 체납액수)을 알 수 있는 기재가 전혀 없었고, 원고가 배당요구의 종기 전까지 일응의 체납세액조차 신고하지 않았으므로, 집행법원으로서는 원고가 제출한 압류등기촉탁서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 관련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금액을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.

따라서 설령 원고가 배당기일 당일 교부청구를 한 지방세(재산세 및 가산금) 채권이 피고를 비롯한 다른 배당채권자들의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법원으로서는 원고를 포함하여 배당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, 집행법원이 원고를 배당채권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.

나. 소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[1)]

4. 결 론

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1) 다만, 원고가 배당요구기한 내에 교부청구를 하였거나 이 사건 2 압류에 따른 이 사건 1 건물에 관한 압류등기 당시 일응의 청구금액을 기재하여 집행법원이 압류등기촉탁서 등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원고는 경우에 따라 E이 체납한 지방세(재산세 및 가산금)를 그 순위에 상응하는 배당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. 따라서 원고의 지방세 채권(재산세 및 가산세)이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배당표상 배당채권자들보다 선순위이라면(원고의 지방세 채권이 이 사건 1 건물에 관한 재산세 및 가산금이라면 당해세에 해당하여 우선변제대상이 될 것이다) 그 순위에 따른 배당금을 배당받을 수 있었고, 동순위라면 안분흡수배당의 방식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었을 것이며, 그와 같이 원고에게 배당되었어야 할 배당금을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았다면 원고는 부당하게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2-01-25

판사 [redacted]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
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2-01-25

별지 (1)

배당액 계계산 결과표

실제배당할금액	461,008,446

흡수순서	구분	채권자	피흡수채권
1차	임차권등기	B	E,O
2차	조세(비당해)	C,P	E,O,A
3차	공과금	D	I>J>E,O,A
4차	조세(비당해)	F,G,H	I>J>E,O,A
5차	근저당권(질권)	I	J>K,L,M,N>E,O
6차	공과금	J	E,O,A
7차	조세(비당해)	K,L,M,N	D,J>E,O,A

	원인일자	구분	채권자	배당요구액	안분금액(기존)	안분금액(대주시 포함)	흡수한도	1차	2차	3차	4차	5차	6차	7차	흡수금계	피흡수합계	최종배당액	기존배당액	변동금액
A	2014.10.06	가압류채권	유한회사	56,311,380	47,489,604	46,508,461	9,802,919		- 1,049,555	- 750,969	- 3,027,697		- 711,262	- 12,516,188		- 18,055,671	28,452,790	32,167,104	- 3,714,314
B	2014.12.29	임차권등기	주식회사의 승계인	17,915,325	15,108,699	14,796,551	3,118,774	3,118,774							3,118,774		17,915,325	17,915,325	-
C	2015.06.25	조세(비당해)	포항시(세정과)	6,188,670	5,219,149	5,111,321	1,077,349		1,077,349						1,077,349		6,188,670	6,188,670	-
D	2015.10.10	공과금	국민건강보험공단강북지사(자격장수부)	12,679,390	10,693,029	10,472,109	2,207,281			2,207,281					2,207,281		12,679,390	12,679,390	-
E	2016.01.05	변상금	서울특별시북부수도사업소(행정지원과)	93,135,600	78,544,918	76,922,157	16,213,433	- 2,571,029	- 1,677,879	- 1,200,542	- 4,840,254	- 13,900,461	- 899,858	- 15,834,928		- 40,924,951	35,997,216	42,441,944	- 6,444,728
F	2016.01.06	조세(비당해)	포천세무서(체납정세과)	46,279,350	39,029,198	38,222,848	8,056,502				8,056,502				8,056,502		46,279,350	46,279,350	-
G	2016.04.30	조세(비당해)	의정부세무서(체납정세과)	4,559,230	3,844,978	3,765,540	793,690				793,690				793,690		4,559,230	4,559,230	-
H	2017.06.06	조세(비당해)	노원세무서(체납정세과)	281,200	237,147	232,248	48,952				48,952				48,952		281,200	281,200	-
I	2017.06.07	근저당권(질권자)		96,860,550	81,686,315	79,996,662	16,861,888					16,861,888			16,861,888		96,860,550	96,860,550	-
J	2017.06.10	공과금	국민건강보험공단강북지사(자격장수부)	10,356,080	8,733,690	8,553,250	1,802,830						1,802,830		1,802,830		10,356,080	10,356,080	-
K	2017.09.10	조세(비당해)	포천시(세정과)	1,048,950	884,621	866,344	182,606							182,606	182,606		1,048,950	1,048,950	-
L	2017.12.06	조세(비당해)	의정부세무서(체납정세과)	654,250	551,755	540,355	113,895							113,895	113,895		654,250	654,250	-
M	2018.01.16	조세(비당해)	노원세무서(체납정세과)	493,030	415,792	407,201	85,829							85,829	85,829		493,030	493,030	-
N	2018.10.03	조세(비당해)	도봉세무서(재산법인납세과)	180,041,320	151,835,933	148,698,978	31,342,342							31,342,342	31,342,342		180,041,320	180,041,320	-
O	2020.08.27	일반채권	주식회사의 승계인	19,842,094	16,733,618	16,387,900	3,454,194	- 547,745	- 357,464	- 255,770	- 1,031,193	- 2,961,427	- 191,710	- 3,373,556		- 8,718,865	7,669,035	9,042,053	- 1,373,018
P	2014.09.10	조세(비당해)	대주시(세무과)	11,532,060		9,524,511	2,007,549		2,007,549						2,007,549		11,532,060		11,532,060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2-01-25

별지 (2)

교부청구서

문서번호		사건번호			
법원명	[redacted]지방법원 경매8계	배당일	배당종기일	2020.08.27	2019.08.30
채납자 성명(법인명)		주민(법인·외국인)등록번호			
채납자 상호					
채납자 주소(영업소)	[redacted]구 [redacted] [redacted]호				
교부청구 금액	금11,532,060원(금일천일백오십삼만이천육십원)				
경매물건	1. [redacted]구 [redacted] [도로명주소] [redacted]구 [redacted] 지상 [redacted]호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근린생활시설 56.60㎡				

교부청구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

과세연도	과세번호	법정기일	세목	세액	가산세	가산금	계	비고
2014	072082	2014.09.10	재산세(토지)	2,362,060	0	1,664,960	4,027,020	
2015	072957	2015.09.10	재산세(토지)	2,405,130	0	1,500,560	3,905,690	
2016	073845	2016.09.10	재산세(토지)	2,452,110	0	1,147,240	3,599,350	
[redacted]				7,219,300	0	4,312,760	11,532,060	